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학 교육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

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3조(인증기준) ①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평가기간)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건축사자격시험일로부터 2012. 12. 31까지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2012년 건축사자격시험일 이전에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

1. 교육과정 체계 적합 심사

평가 항목	배 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가 (×1.0)	나 (×0.8)	다 (×0.6)	라 (×0.4)	
1. 전체이수(졸업) 학점	5	160학점 이상	159~155 학점	154~150 학점	150학점 미만	
2. 교양과목 이수학점	2	40학점 이상	39~35 학점	34~30 학점	30학점 미만	
3.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역 이수학점	3	6학점 이상	5~4 학점	3학점	3학점 미만	
4. 문화적 맥락 영역 이수학점	역사	9	18학점 이상	17~15 학점	14~12 학점	12학점 미만
	인간행태					
	환경					
5. 설계영역	이수학점	13	50학점 이상	49~45 학점	44~40 학점	40학점 미만
	학점: 시수	3	1:2	1:1.8	1:1.6	1:1.6 미만
6. 기술영역 이수학점	구조	9	24학점 이상	23~21 학점	20~18 학점	18학점 미만
	환경 조절					
	시공					
7. 실무영역 이수학점	3	6학점 이상	5~4학점	3학점	3학점 미만	
8. 전공 선택과목 이수학점	3	21학점 이상	20~18 학점	17~15 학점	15학점 미만	
계	50					

- 1) 4학기제의 경우 2/3 학점만 인정
- 2) 5. 설계 영역의 [학점 : 시수]는 설계 교과목의 [1학점 : 1주 강의 시간 수]로 평가(예: 5학점 10시간 수업 = 1:2)
- 3) 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 1학점은 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4)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3+2, 4+1, 4+2 등)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으로 평가
- 5) 2년제 또는 3년제 이상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은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평가
- 6) 그 밖에 학·석사 또는 석·박사 연계과정으로서 5년 이상 교육과정은 전체 이수학점으로 평가
- 7) 8. 전공 선택과목 이수학점은 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이외의 전공 선택과목을 말하며, 전체 교육과정이 전공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된 경우, 각 영역(3번~7번)의 나등급에 해당하는 학점보다 많은 학점을 합하여 평가(예: 기술영역 30학점 이수 = 기술영역에서 24학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6학점을 전공 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평가)

2.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 심사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 (×1.0)	양호 (×0.8)	보통 (×0.6)	미흡 (×0.4)	
1. 의사 소통	1. 구두 및 문서 표현과 외국어 구사 능력	1					
	2. 도서작성 및 발표 능력	1					
	3. 지도력에 대한 인지	1					
	4. 다양한 미디어 활용 능력	1					
2. 문화적 맥락	5. 건축과 과학 및 예술의 이해	1					
	6. 세계 건축사와 전통의 이해	1					
	7. 한국 건축사와 전통의 이해	1					
	8. 건축과 사회의 이해	1					
	9. 선례의 활용 능력	1					
	10. 인간행태의 이해	1					
	11.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의 이해	1					
3. 설 계	12. 형태 및 공간구성 능력	2					
	13. 분석 및 프로그램 작성 능력	2					
	14. 협력 작업 능력	2					
	15. 대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이해 및 설계반영 능력	2					
	16. 대지분석 및 대지조성 계획능력	2					
	17. 무장애 설계 능력	2					
	18. 안전 및 방재 설계 능력	2					
	19.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능력	2					
	20. 증·개축, 보수, 유지·관리 설계 능력	2					
	21. 주거지계획,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능력	2					
	22. 기술도서 작성 능력	2					
	23. 종합설계 능력	3					
	4. 기 술	24. 구조원리의 이해	1				
25. 구조 시스템의 이해		1					
26. 지속가능한 환경조절의 이해		1					
27. 환경 시스템의 이해		1					
28. 설비 시스템의 이해		1					
29. 컴퓨터응용기술과 통합설계의 이해		1					
30. 시공재료 및 부품의 이해		1					
31. 재활용 및 유해방지의 이해		1					
32. 시공절차 및 건설관리의 이해		1					
5. 실 무		3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의 이해	1				
	34.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건축사 역할의 이해	1					
	35. 실무관련 도서의 인지	1					
	36. 건축법규의 이해	1					
	37.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1					
계		50					
가점/감점	개인작품집(portfolio)	±5					
합 계		50±5					